

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709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일자 : 2025. 8. 29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행 공간이나 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 민원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.

따라서,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대한 항목을 구체화하고 무단방치에 대한 단속 및 견인비용 부과 기준 등 관리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범사업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(안 제4조의2)

-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 시행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

나. 안전교육 항목을 명확히 규정(안 제5조)

- 이용자 안전교육에 대한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일관성, 전문성을 제고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규정 강화(안 제9조)

- 무단방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을 단속대상에 포함시켜 단속대상을 “도로,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, 그 밖의 공공장소”로 변경함으로써 무단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시행함.
-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「도로교통

법」 제35조 및 제36조로 단속근거를 변경함.

- 무단방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부과비용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여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.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 제74조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, 제35조 및 제36조,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15조, 「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」의 별표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

가. 예고기간 : 2025. 7. 30. ~ 8. 19.(20일간)

나. 예고결과 : 2025. 8. 11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접수 1건

- 의견내용 : 입법예고안 제9조제3항의 ‘대여사업자’ 삭제

- 의견서 검토 결과 : 상위법령과의 내용 합치를 위해 ‘대여사업자’ 문구 삭제(의견 반영)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시범사업의 실시 등)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시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선정·실시에 필요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, 분석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효과성에 대한 기준은 안전사고 발생률, 이용자 만족도, 교통 효율성 개선 등을 반영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통행 및 안전운행 방법
2.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
3. 장치의 점검 및 관리 방법

4. 그 밖에 군수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법인,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그 교육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중 “도로, 그 밖에”를 “도로,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, 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행정대집행법」”을 “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 및 제36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·보관한 경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금액은 「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」의 별표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·보관 비용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) 제9조제1항, 제2항 및 제3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·보관한 경우 그에 들인 비용의 징수는 종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다.

제3조(개인형 이동장치 견인·보관 비용 징수규정의 적용례) 제9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·보관한 것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<신 설></p> | <p>제4조의2(시범사업의 실시 등)</p> <p>① <u>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시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선정·실시에 필요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, 분석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제3항의 효과성에 대한 기준은 안전사고 발생률, 이용자 만족도, 교통 효율성 개선 등을 반영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.</u></p> |
| <p>제5조(안전교육 등) <u>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| <p>제5조(안전교육 등) ① <u>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통행 및 안전운행 방법</u> 2. <u>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</u> 3. <u>장치의 점검 및 관리 방법</u> 4. <u>그 밖에 군수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|

<신 설>

제9조(무단방치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도로,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,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「도로법」 제74조 또는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·보관·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·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·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법인,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그 교육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무단방치 금지 등) ① ——— 도로,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, 그 밖의 —————.

② —————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 및 제36조 —————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·보관한 경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금액은 「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」의 별표에 따른다.

관 계 법 령

□ 도로법

제74조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반복적,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
 2.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,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도로교통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16. (생략)
17. “차마”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.
 - 가. “차”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3) 원동기장치자전거
 - 4) 자전거
- 17.2. ~ 19. (생략)
- 19의2. “개인형 이동장치”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20. ~ 21. (생략)
- 21의2. “자전거등”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.
- 21의3 ~ 34. (생략)

제35조(주차위반에 대한 조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·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1. 경찰공무원

2. 시장등(도지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(이하 “시·군공무원”이라 한다)

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.

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(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·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.

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·보관·공고·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.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.

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·보관·공고·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공탁법」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.

제36조(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)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등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□ 도로교통법 시행령

제15조(소요비용의 징수 등) ① 경찰서장,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·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(이하 “소요비용”이라 한다)을 징수하고,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.

- ② 경찰서장,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,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□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제9조(무단방치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도로,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,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·보관·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견인·보관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별표에 따른다.

[별표]

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 및 보관료(제9조제3항 관련)

| 구 분 | 견인료 | 보관료 |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| | 개인형 이동장치 | 30,000원 |
| 1일(최대) | 15,000원 | | |

1. 비용발생 관련 조문

- 내 용 :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제4조의2 제2항 및 제5조 제2항 관련
- 주요내용
 - 시범사업의 선정·실시에 필요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(안 제4조의2 제2항)
 - 효율적인 안전교육 시행을 위해 관련 법인,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그 교육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(안 제5조 제2항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2호 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의 개정안에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비용 추계가 불가능

4. 작성자 :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권춘선

참고1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」 일부개정안

- 성명(단체명) : 전은정
- 주 소 :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사랑마을 101-301
- 전 화 번 호 : 010-3355-3892

| 조례안 내용 | 찬성여부 | | 의 건 | 비 고 |
|--|------|----|---|-----|
| | 찬성 | 반대 | | |
| <p>제9조(무단방치 금지 등)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·보관한 경우 그 <u>대여사업자로</u> 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</p> | ○ | ○ | <p>-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·보관에 대한 비용 부담을 대여사업자로 한정 명시하였는데</p> <p>- 이는 견인·보관의 비용을 대여사업자에게만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개인 소유의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 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사항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</p> <p>- 비용 부담의 주체를 '대여사업자'에서 '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 나 상위법령과의 합치를 위해 비용부담자에 대한 문구 삭제를 건의합니다.</p> | |

| | | | | |
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
| 선 결 | 군 수 | 부군수 | 국 장 | 전 결 |
| 접수일시 | 25.8.12 | 14589 | 과 장 | |
| 처리과 | 교통행정과 | | 담당 | 권지민 |

참고2

입법예고사항 의견서 접수에 따른 반영 여부 검토

1. 조 례 명 :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7. 29. ~ 8. 18.
3. 의견제출 접수 : 2025. 8. 11.
4. 관 련 조 문 : 안 제9조 제3항 대여사업자(비용부담자) 변경
5. 의견제출 내용 :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‘대여사업자’ 대신 ‘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’ 나 상위법령과의 내용 합치를 위해 비용부담자에 대한 문구 삭제 건의

도로교통법 제35조(주차위반에 대한 조치)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 위반 차의 이동·보관·공고·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(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)가 부담한다.

6. 의견 검토 결과 : 수정안 반영

- 제출된 의견을 보면 견인·보관에 든 비용 부담의 주체를 대여사업자로 할 경우 대여사업자에게만 부담한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저해할 수 있어
- 상위법령과의 내용 합치를 위해 대여사업자(비용부담자)에 대한 문구를 삭제

7. 조례안 수정내용

<원안>

| 관련조항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|--|
| 제9조(무단방치 금지 등) ③ |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·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·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 |

<수정안>

| 관련조항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|--|
| 제9조(무단방치 금지 등) ③ |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·보관한 경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금액은 「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」의 별표에 따른다. |